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 대상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를 종료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1) 장기요양보험 일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감경대상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정해진 감경율에 따라 이용 수가의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급여부분) 그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매월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계약 해지 조치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하며,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 변경 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외출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8) 기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